

등록번호	기획예산과-1953
등록일자	2026. 1. 29.
결재일자	2026. 1. 29.
공개여부	대국민 공개

주무관	재정관리팀장	기획팀장	기획행정국장
변혜원	유승길	이정민	정운호
협조	예산팀장 교육후생팀장 주민자치팀장 뉴미디어팀장	이영림 박윤희 안효원 정재우	

시민 성공시대' 다시 뛰는 춘천'

- 시민의견을 반영한 현장 중심 예산편성 강화 - 2026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 주요내용 】

- 업무이관('26. 1.): 자치행정과 → 기획예산과(재정관리팀)
- 「주민e참여」로 제안 접수 활성화 및 제도 홍보 강화
- 사업부서 및 위원회 대상 제도 홍보
- 주민참여예산학교 추진(읍·면·동 주민 및 주민참여예산위원 대상)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사전검토 체크리스트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사전검토 사항	해당 없음	세부내용
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 실태조사서 ■ 타 지자체 유사정책 □ 국내외 사례 분석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등 숙의과정을 거쳤습니까? □ 토론회 □ 공청회 ■ 설문조사 □ 시민공모 □ 자문위원회 □ TF운영 □ 타당성조사 □ 기타	☐	
정책 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법규를 검토하였습니까? □ 공직선거법 ■ 관련법규(법령·조례·규칙)	☐	
	◆ 정책(사업)의 재원 확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국비 □ 도비 ■ 시비 □ 기타(민자 등)	☐	
	◆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를 검토하였습니까? □ 예산편성 사전절차 체크리스트 검토완료	☒	
	◆ 정책(사업)의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 □ 이해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 시민 안전대책 □ 일자리창출 □ 민원발생 가능성	☒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검토완료	☒	
	◆ 정책(사업) 홍보 대상을 검토하였습니까? □ 노인 □ 장애인 □ 수급자 □ 여성 □ 학생 □ 청년 ■ 전 시민 □ 기타 (※ 홍보 불요 시 세부내용에 이유 기재)	☐	
정책 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검토완료 (중앙정부, 강원도, 타 지자체, 관련부서, 민간 등)	☐	
	◆ 국내외 정책(사업) 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보도자료 ■ 행복알리미 □ 설명회(기자,현장) ■ 보내소식지 ■ SNS ■ 기타(현수막 등)	☐	
평가 환류	◆ 정책(사업)의 과정과 성과에 대한 평가·환류는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 자체평가 □ 평가보고회 □ 관련단체회의 □ 기타	☐	
기타	◆ 공개여부의 "비공개" 설정 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 검토완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8호)	☐	
	◆ 불필요한 외래어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검토완료	☐	

2026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 '26. 1. '주민참여예산' 업무 이관(자치행정과 → 기획예산과)에 따라 추진 상황을 재정비하고 연간 운영계획을 확장 시행하고자 함
- 주민의 예산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함

I 추진근거 및 운영제도

☐ 추진근거(법적 의무 사항)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동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절차)
-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지원)

☐ 주민 참여형 예산편성 제도의 개괄

구 분	시민 공모형	자치 계획형
사 업 명	시민 제안 공모사업	주민주도 마을사업
참여대상	일반시민	해당 읍면동 주민
선정방법	제안서 제출	마을의제 선정, 주민총회 개최
선정주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집행주체	춘천시	읍면동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 (일반 참여형) 시장 간담회, 주민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 의견을 예산에 반영한 경우도 해당

II

2025년 운영 결과 및 평가

□ 예산반영 현황: 92억원, 99개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개)

구 분	총 계	시민 공모형	자치 계획형	일반 참여형
반영 예산액	9,196	180	1,121	7,895
반영 사업수	99	2	71	26

□ 운영성과

○ 주민참여예산 당초예산 반영규모 확대

- (2025년) 82.8억원 ⇒ (2026년) 91.9억원으로 전년대비 11% 증가

○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방안 다양화

- 온라인 홍보 추진(언론 보도, 청사 내·외부 전광판, 춘천행복알리미 등)
- 오프라인 홍보 추진(포스터·리플렛·책자 등)

○ 「주민e참여」 온라인 플랫폼 운영('25년 시행)

- 전용 사이버창구 운영으로 제안 접수 및 관리의 효율성 향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역량 강화 및 인적자원 활용

- 성과체감형 워크숍 추진으로 위원들의 효능감 및 사기 진작
-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 설문조사 홍보, 위원 주도 교육 진행 등 위원 역량 및 네트워크 활용으로 내실있는 제도 운영 도모

○ 주요 반영사업

참여형태	사업명	예산액	제안 사유
시민 공모형	보행자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 신설 (교통과)	100백만원	보행자 신호기 잔여시간 표시 도입을 통한 보행자 교통안전 강화
일반 참여형	재활용 도움센터 조성 및 운영 (자원순환과)	107백만원	실내 집하장 조성으로 인근지역 주민의 생 활환경 보장 및 불법투기 방지

III

2026년 추진과제 및 운영목표

☐ 추진과제

재정민주주의 실현

주민참여예산 참여 계층 확대 및 부서 간 협력 강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고도화	▶ 주민참여예산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시민제안 공모사업 - 주민주도 마을사업 - 일반참여 예산사업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홍보 및 예산학교 운영	▶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 읍·면·동 대상 예산학교 - 주민참여예산위원 대상 주민참여 예산학교 ▶ 온·오프라인 홍보

☐ 운영목표 ['24년] 83억 원 ⇒ ['25년] 92억 원 ⇒ ['26년 목표] 100억 원 이상

구 분	총 계	시민 공모형	자치 계획형	일반 참여형
'25년 반영	92억 원	1.8억 원	11억 원	78.9억 원



'26년 목표	100억 원	5억 원	15억 원	80억 원
---------	--------	------	-------	-------

IV

추진계획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고도화

① 시민제안 공모사업

- 공모기간: 연중(단, 2026. 8. 1. 이후 접수 사업은 2028년 예산 편성 검토)

2026. 7. 31.까지 접수분: (2026년 검토) 2027 예산 편성 반영 검토
 2026. 8. 1. ~ 2027. 7. 31. 접수분: (2027년 검토) 2028년 예산 편성 반영 검토

- 참여대상: 춘천시민, 춘천시 소재 직장인·학생·단체 등
 ○ 제안방법: 온라인(주민e참여, 이메일)
 ○ 사업대상: 총사업비 20억 원 미만인 사업 ※행사·축제성 사업은 1억 원 미만
 ○ 최종선정: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추진과정]

공 모	⇒	부서 검토	⇒	위원회 심의	⇒	예산 편성	⇒	예산 확정
연중		제안 접수 시		7~9월		7~10월		다음 해 1월
상시 접수		제안서 검토 및 현장실사		▶ (1차) 분과회의 ▶ (최종) 정기회		부서 최종 검토 및 예산안 반영		시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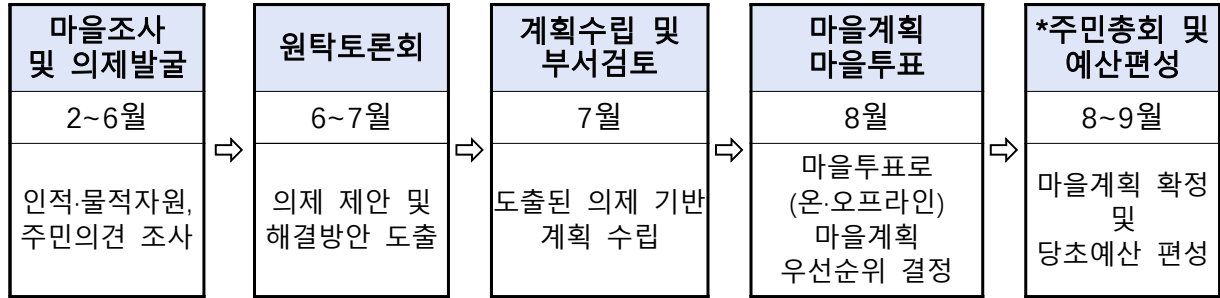
- 문제점 및 개선 계획

문제점	개선계획
① 연중접수에도 불구하고, 주민 관심 및 참여 저조	• 행정안전부 「주민e참여」로 제안 접수 활성화 및 온·오프라인을 통한 제도홍보 강화 - 행복알리미, 시 홈페이지 배너, 전광판 등 •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유공자 시상
② 제도에 대한 시민 및 사업부서의 인지도 부족	• 사업 부서 및 소관 위원회 대상 제도 홍보 - 문화복지, 경제교통 부문 간 네트워크 강화 • 주민참여예산위원 소속 기관(단체)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참여 계층 다양화

② 주민주도 마을사업 * 관리부서: 자치행정과

- 제안분야: 마을단위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회의 발굴 사업
예시) 마을환경 개선, 축제, 문화, 복지, 이웃 소통 프로그램 등

【추진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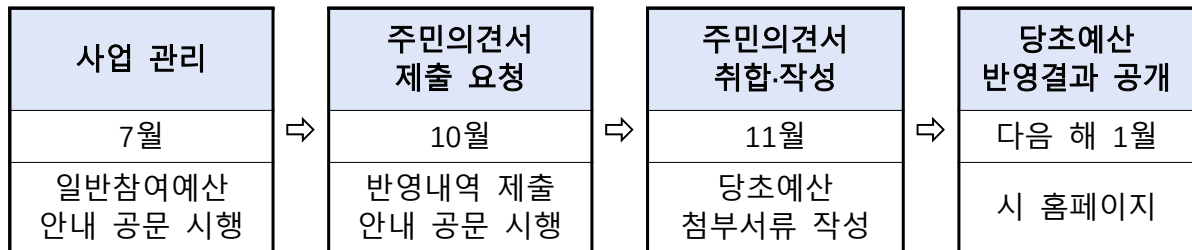


* 22개소(자치회 18, 위원회 4)

③ 일반참여 예산사업

- 대상사업: 주민간담회, 토론회, 상생협의 등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사업
- 반영방법: 부서 자체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예산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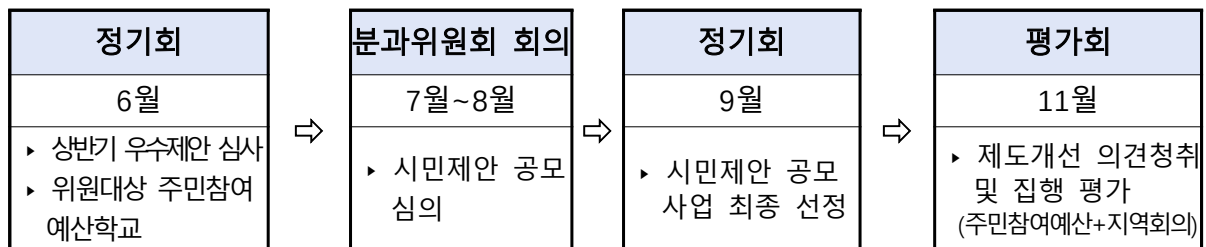
【추진과정】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임 기: 2025. 5. 15. ~ 2027. 5. 14.(2년, 1회 연임가능)
- 구 성: 31명, 2개 분과 운영(문화복지·경제교통)

【추진과정】



☐ 시민의견 설문조사 시행

☐ 설문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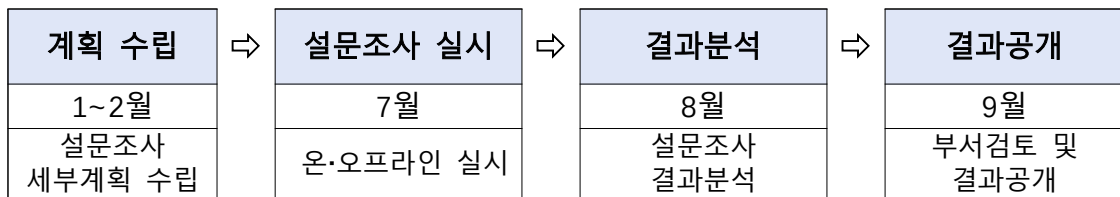
- 2027년도 재정운영 및 우선투자방향,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개선 방안, 기타 건의사항 등

☐ 활용방법

- 홈페이지 공개 및 전 부서 통보, 예산편성 기초 자료로 활용

☐ 조사방법: 온·오프라인 병행

【추진과정】



2 ☐ 홍보 및 예산학교 운영

☐ 운영근거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6조(예산학교)

☐ 운영계획

대 상	운영계획
읍·면·동 주민 등	• 기간: 2026. 6. ~ 9. • 내용: 읍·면·동 대상 제도 홍보 및 시민제안 공모사업 참여 유도 - 주민자치회 원탁토론회 및 주민총회 시 교육 운영 - 시민제안 공모사업으로 접수
주민참여예산위원	• 기간: 2026. 6. ~ 10. • 장소: 시청 다목적회의실 등 • 내용: 주민참여예산위원 대상 교육 운영 - 주민참여예산제 개요 - 제안서 및 주민의견서 작성 방법 - 시민제안 공모사업 심사 및 모니터링 방법 등

□ 홍보계획

- 홍보 리플릿 제작·배부
 -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제안 공모사업 안내, 참여방법 소개 등
- 온·오프라인 대민 홍보 추진
 - (온라인) 시 홈페이지, 춘천행복알리미, 보도자료 등
 - (오프라인) 포스터, 리플릿, 공공기관 전광판 등

V 소요예산

세부사업명	편성목	편성내용	예산액
합계			17,500천원
시민주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사무관리비 (201-01)	• 일반수용비 - 위원회 운영(회의참석수당 등) - 회의자료 제작·인쇄 등	13,500천원
	행사운영비 (201-03)	• 위원회 교육 및 워크숍 • 찾아가는 예산학교 추진	4,000천원

VI 행정사항

관련 부서	협조사항
전 부서	• 주민참여예산 홍보 적극 협조 • 시민제안 공모사업 검토 철저 - 추진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법령 등) 및 사유 명시 - 제안자와 적극적 의사소통 및 필요시 현장 방문 실시 - 사업비 미기재 등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적정 사업비 산출 및 의견 제시
홍보담당관	• 주민참여예산 홍보 적극 협조 - 홈페이지 팝업창, SNS(인스타그램) 게재 - 행복알리미 전송, 보도자료 배포 등
자치행정과	• 읍면동 자치계획형 사업 취합 • 주민자치회 회의시 제도 홍보 협조
총무과	• 주민참여예산 교육 상시학습 인정
읍·면·동	• 예산학교 실시 지원 • 읍면동 지역회의 운영 지원 • 제안사업 발굴 회의, 현장조사, 모니터링 등 지원

붙임

관련 법률 및 시행령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3., 2018. 3. 27.>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 3. 27.>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8. 3. 27.>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3., 2017. 7. 26., 2018. 3. 27.>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8. 3. 27.>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3.>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 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예산과정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3. 3.>